

	강사료 지급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9. 1.
		최종개정일자	2022. 3. 1.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 대학의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① 초과강의는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외의 수업을 말한다.
- ② 시간강의는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.
- ③ 일반강의는 대학전임교원의 평상수업을 말한다.
- ④ 실습강의는 실험, 실습, 실기 및 임상실습 등의 수업을 말한다.
- ⑤ 특별강의는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시간강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3조(강의 책임시간)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<개정 2021.03.01.>

- ① 일반교원의 책임시간은 해당 학년도 2개 학기 합계 24시간으로 한다(단 연구년, 산업체 연수 등으로 한 학기 근무 시 1학기당 12시간으로 한다).
- ② 교양교수 책임시간은 해당 학년도 2개 학기 합계 30시간으로 한다.
- ③ 온라인강의 책임시간 인정은 강의 시간의 1/2만 인정한다.
- ④ 기타 교원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책임시간의 일부면제)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[별표1]과 같이 한다. 다만,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은 해당교원의 책임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7.1.23.>

제5조(미달된 책임시간의 급여 공제) <개정 2021.03.01.><개정 2022.03.01.>

- ①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이행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교원의 급여를 공제한다.
- ② 책임시간 미달에 대한 급여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1~3시간 미달 시 급여의 30%
 2. 4~6시간 미달 시 급여의 40%
 3. 7~9시간 미달 시 급여의 50%
 4. 9시간 초과 미달 시 급여의 60%
- ③ 책임시간 미달에 대한 급여공제 방법 및 기간은 해당 교원과 협의 후 급여에서 공제한다.

제6조(책임시간 미달에 대한 제재) ① 1년간의 총 시수 부족이 확정되면 해당교원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위 사유서를 심사하여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년 또는 가까운 1년간 교내연구비 신청,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과 사실을 해당 교수에게 통지한다.

제7조(강사료 계산) ① 강사료는 1주 단위로 시간수를 계산하여 월별로 지급한다. 단, 자격이나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한다.

- ② 특별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2주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의료는 특강 실시 후 지급한다.

제8조(강사료 지급 기준액 및 대상)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한다.

- ① 초과강사료는 주당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교원에게 초과된 시간 수에 따라 초과강사

료를 지급한다.

② 시간강사료는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한다.

③ 특별강사료는 강의실시 후 지급한다.

제9조(지급 기준액)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[별표2]와 같다.

제10조(강사료 산정기준) 전임교수 초과강사료의 산정방법은 주 · 야간 강의가 있는 경우, 책임시간을 공제함에 있어서 주간시간을 먼저 공제하고, 주간 시간이 책임시간에 미달할 시 야간시간을 공제하여 잔여시간을 초과시간으로 계산한다.

제11조(강사료 지급) 강사료는 당월분을 강의가 끝난 25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, 당해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12조(시행세칙 등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보직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<개정 2016.2.19.><개정 2016.12.26.><개정 2019.5.3.><개정 2019.9.2.> <개정 2021.02.01.>

구 분	책임 시간 (연간)
부총장, 교무입학처장, 기획산학처장, 교육혁신처장	12
산학협력단장, 도서관장, 정보관리소장, 교수학습센터장, 창의교육혁신센터장	24
부처장, 평생교육원장, 학과장, 취업지원실장, 학생상담센터장, 국제교류원장, 도시디자인연구소장,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 책임자	24

[별표2] 강사료 지급 기준액<개정 2016.2.19.><개정 2016.11.11><개정 2022.03.01>

직 종	구 분	강 사 료	비 고
전임교원 초과강사료	주간	10,000	
	야간	12,000	
겸임교원 강사료	기본	20,000	
	간호학과	35,000	
초빙교원 및 기타교원	기본급	연봉으로 지급하며, 매월 분할 지급한다.	
	초과시수	겸임교원과 동일한 강사료를 지급한다.	
강사 강사료	주간	32,000	
	야간	32,000	